

■ 최신 법령 ■

[공정거래]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박형삼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1.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경쟁제품 취급금지 범위 축소, 판매목표량 위반시 계약해지 제한

가. 공정위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해 모범계약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임. 향후 공정위의 제약분야 모니터링 대상 및 방향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음.

나. 주요 내용: 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생산 제한을 금지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을 금지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의 범위 축소), ②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시 즉시 계약해지를 금지 (최소구매량·판매목표량 한정 조항 개선), ③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가능 (원료구매 강제 조항 개선), ④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속 기술혁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상허여 조건을 금지 (개량기술 이전 조항 제한).

2. 다운로드 :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안)」